

충남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 2.22.]
제1차 개정 2013. 03. 11
제2차 개정 2014. 11. 06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규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당해 학기말까지 수료가 가능한 자
2.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외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자
4. 논문 계획 및 심사에서 합격한 자
5. 박사학위과정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자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1. (시험횟수)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2. (시험자격) 자격시험은 학위과정별로 수료학점의 3분의 2이상을 취득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3. (응시절차)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험과목) 자격시험은 전공에 대하여 실시하며, 교과목은 응시자가 수강한 교과목 내에서 정하되, 석사 및 박사과정 4과목으로 한다.
5. (시험출제기준) 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6.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학과 주임교수가 위촉한다.

7. (합격기준) 전공시험은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이후 시행되는 시험에 다시 응시하여야 한다.
8. (보고) 자격시험의 합격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TEPS 572점 이상
 2. TOEIC 700점 이상
 3. TOEFL(CBT) 217점 이상
 4. TOEFL(IBT) 82점 이상
 5. TOFEL(PBT) 553점 이상
 6.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7.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모의토익 750점 이상(개정 2014.11.06.)
- ②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논문연구계획서 발표 및 심사)

- ① 석사 및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가 개시되기 이전 학기에 논문계획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박사 학위과정의 경우, 논문제출자격시험의 합격자로서,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 ②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전임교수 전원(연구년 및 파견 근무 교수 제외)이 발표 심사를 하며, 교수회의를 통해 학생의 논문진행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학술지 종류)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혹은 등재후보) 이상
2. (논문게재율) 논문게재율 100% 이상 (2008년 이전 입학자의 경우, ① 단독 논문 100%, ② 2인 공저 70%, ③ 3인 이상 공저 50%로 환산하며, 2008년 이후 입학자의 경우, 100%/저자수로 계산하되 주저자와 교신저자인 경우 20%를 가산)이며, 게재인정기간은 논문계획서 심사일 기준 5년 이내로 한다(단, 심사일 기준으로 논문게재 예정도 포함한다).
3. (승인) 논문게재율은 주임교수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제8조(논문지도위원회)

1.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1.06)
2.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1.06)
3. 수료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4.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학내 전임교수로 구성한다.

제9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2014.11.06.)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단, 이 세칙 시행 이전의 입학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